

노동 관련 문제 상담

종합노동상담코너에서는 직장 내 각종 문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 해고, 갹신거절, 배치전환, 임금삭감, 모집·채용, 따돌림·괴롭힘, 상사에 의한 괴롭힘 등 모든 분야의 노동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면담 혹은 전화로 상담해드립니다.
 예약이 필요 없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받는 분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개별 노동 관련 분쟁의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노동상담을 받고 있으며, '조언·지도' 및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기준법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노동기준감독서 등의 행정지도 등 권한을 가지는 담당부서에 전달합니다.

문의처 효고노동국 감독과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중국어) 0570-001-702
 히메지노동기준감독서 외국인노동자상담코너(대응언어:베트남어) 079-224-8181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검색(다국어 대응)
<https://www.check-roudou.mhlw.go.jp/soudan/foreigner.html>

니시노미야노동기준감독서 0798-26-3733

※ 주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 관련 용어 설명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이란 노동조건에 대해서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과 사용자가 주고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임금,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건내주어야 합니다.
 임금등이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등에 가능한 한 자세히 노동조건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일본어로 된 경우에는 모국어로 번역하여 내용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회사에 노동조건과 복무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만 할뿐 아니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한 매년 개정됩니다.

최저임금은 파트타이머나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관계 상담창구에 문의바랍니다.

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

노동기준법상 노동시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작업준비나 뒷처리, 연수 등, 그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노동시간이 됩니다.

○휴식시간

휴식시간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시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직종, 업종이나 서면에 따른 협정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사용자는 6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서는 45분의 휴식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잔업·할증임금, 휴일·휴가 등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고 및 퇴직

○해고란

사용자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것을「해고」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즉시 노동기준감독서나 노동관계의 상담창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이유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센터나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기준법위반인 해고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

노동자의 퇴직신청이나 퇴직원의 제출에 대해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면 합의계약에 따라 노동관계는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퇴직할 경우 퇴직 예정일의 일정 기간 전(예: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회사도 많으므로, 퇴직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